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

제 출 일 : 2026. 8. 3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」제7조(사무의 위탁)
- 「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규칙」제6조(수탁자의 자격기준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6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재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위탁사무 내용

○ 「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업무

-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
- 정신질환의 예방, 상담, 조기발견,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
-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조사 및 진단
-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
-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,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·홍보
-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

-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
- 정신질환자 응급상황, 감염병, 재난 등 지역사회 위기관리 사업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

3. 위탁시설 개요

위탁시설	인력	소재지	시설규모	개소연도
총 계	**54명**			
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	29명	남양주시 경춘로 522 (남양주시 제2청사 별관 1층, 남양주보건소 5층)	363.6㎡ [별관 1층(327.2㎡), 보건소 5층(36.4㎡]	1997년
(부설)자살예방센터	19명			2020년
(부설)청년마음건강센터	6명	남양주시 금곡로 26	188㎡	2022년

4. 민간위탁 기간

○ 위탁기간: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)

※ 기존 위탁기간(2024. 1. 1.~ 2026. 12. 31.) 만료에 따른 재위탁

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선정방식: 공개모집

- (재위탁)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

의회 동의 ▶ 공개모집 ▶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▶ 위·수탁 계약 체결

○ 수탁기관 자격요건

-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운영예산: 3,266,552천원(2026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기준)

- 기관별 예산

(단위 : 천원)

기관명	합계	국비	도비	시비	비고
총계	3,266,552	1,168,426	290,213	1,807,913	
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	2,428,865	890,163	188,647	1,350,055	사업비: 655,897 운영비: 304,700 인건비: 2,305,955
(부설)자살예방센터	637,687	178,263	86,566	372,858	
(부설)청년마음건강센터	200,000	100,000	15,000	85,000	

7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정신건강 상담, 사례관리,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
경제적 효율성	○ 전문기관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효과성 향상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평가 및 사업 만족도 조사, 정부합동평가 지표관리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관계 법령 및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도·점검, 정산 보고 등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정신건강 분야 전문기관의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상담·사례관리·자살예방 등 전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
종 합 의 견	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높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전문인력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8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향후계획

- 2026. 9. ~ 10. : 위탁기관 모집 공고
- 2026. 10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
- 2026. 11. : 위탁계약 체결

○ 기타사항

- 관련법령 [붙임]

붙임 관련 법령

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**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**

○ 「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」 제7조(사무의 위탁)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**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,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**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(수탁자의 자격기준)

제6조(수탁자의 자격기준)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○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제6조 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4.10.2.>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4.2.15.>
1. 위탁기간의 변경
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3.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